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3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박대출의원안)	2
가. 우정사업본부, 연기금 등의 차익거래 목적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
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
다.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8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

I. 개요

1.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3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20.

(3) 회 부 일 : 2026. 5.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2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박대출의원안)

가. 우정사업본부, 연기금 등의 차익거래 목적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우정사업본부, 연기금 등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제117조제1항제5호)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연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와 연기금 등의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5호는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가 장내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2026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음¹⁾.

1)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이는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등의 선물과 현물의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등에 대한 차익거래를 위해 전용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참고로, 현·선물 차익거래(Arbitrage)는 동일한 기초자산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에 일시적인 가격괴리가 발생한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가격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현·선물 간 가격차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는 거래를 말함.

예를 들어, (예시①) 단순화를 위하여 이자비용, 보관비용 및 배당수익 등 보유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현물가격이 100원인 경우 선물이론가격도 100원이 됨. 이때 실제 선물가격이 110원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선물이 이론가격보다 10원 고평가된 것이므로, 차익거래자는 현물을 100원에 매수하는 동시에 선물을 110원에 매도함. 이후 만기에 가격이 110원으로 수렴하면, 보유한 현물을 선물계약에 따라 인도함으로써 10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됨.

만기에 가격이 90원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도 차익은 변하지 않음. 차익거래자는 100원에 매수한 현물을 만기에 90원에 인도하여 현물에서 10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110원에 매도하기로 한 선물계약에서는 20원의 이익이 발생함. 결과적으로 현물손실 10원에서 선

물이익 20원을 상계하여 10원의 순이익을 실현하게 되어, 현·선물 가격차인 10원의 차익은 그대로 유지됨.

반대로 (예시②) 현물가격이 110원이고 선물가격이 100원인 경우에는 현물을 대여하여 110원에 매도하는 동시에 선물을 100원에 매수함. 이후 만기에 가격이 100원으로 수렴하면 선물계약을 통해 100원에 주식을 인수하여 기존 매도분을 상환함으로써 최초의 현·선물 가격차인 10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됨.

[(예시①) 현물가격 < 선물가격]

1월1일(A주식 100원, 선물 110원)		7월1일(A주식 110원으로 상승)	
A주식 100원에 매수	→	A주식 110원에 매도 (10차익)	
현·선물 가격차이 10원		현·선물 가격은 수렴하고 차익 10원 실현	
A주식선물 110원 7.1 매도계약	→	A주식 110원에 매수 후 선물 결제 (차익없음)	

[(예시②) 현물가격 > 선물가격]

1월1일(A주식 110원, 선물 100원)		7월1일(A주식 100원으로 하락)	
A주식 110원에 매도	→	A주식 100원에 매수 (10차익)	
현·선물 가격차이 10원		현·선물 가격은 수렴하고 차익 10원 실현	
A주식선물 100원 7.1 매수계약	→	A주식 100원에 인수 후 현물시장에서 100원에 매도 (차익없음)	

- 이와 같은 차익거래는 현물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선물이론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반대의 경우에는 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를 유도하여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간 가격괴리를 축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적정가격이 형성되는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이 작동됨.

□ 동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① 2010년까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 등’으로 보아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였으나, ② 2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양도 시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음. ③ 이후 전체 차익거래시장의 위축과 외국인 영향력 확대 등 시장변동성 심화로 인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고, ④ 2018년 정기회에서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으로 연장하면서, 기금관리주제도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과 관련한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고, 이후 적용기한은 2023년, 2026년까지 각각 연장하였음.

□ 동 조세특례에 관하여는 ① 증권거래세율 이내의 가격피리 상황에서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익거래를 통한 가격발견 기능²⁾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② 차익거래가 활성화되어 증권시장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대상인 일반거래를 유도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자금조달창구 기능에도 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차익거래는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다른 차익거래 참여자와 달리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에 대해서만 공공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자산의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시장이 발견하도록 돕는 기능

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제117조제1항제16호)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연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³⁾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⁴⁾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2026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음.

- 3)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 4)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각 호 생략)

□ 동 조세특례는 2000년 10월부터 2005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된 이래, 2006년, 2008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1년, 2023년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026년 6월 기준 10개의 금융지주회사⁵⁾가 있으며, 최근에도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⁶⁾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식 교환·이전과정에서 거래세를 면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설립비용을 경감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도입취지가 있음.

① 금융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원활히하여 금융회사의 겸업주의 및 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 ② 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기 위한 주식·이전교환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라 기업 구조개편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세특례는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6) 톱데일리. “잇단 M&A 시동거는 교보생명, 금융지주사 퍼즐 맞추나”

다.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개정안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제117조제1항제23호)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연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안은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규정⁷⁾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임.

☐ 동 제도는 2015년 부실기업의 회생 및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투자·출자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첫 도입되었으며,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는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간접 투자·출자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 동 조세특례에 관하여는 ①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

7)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하여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고, ② 위기기업을 시장친화적이고 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적용기한의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개정안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증권거래세 면제(제117조제1항제24호)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연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안은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6년 말까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규정⁸⁾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란,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그 소유비율에 따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

8)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임.

이 때 “사업재편”⁹⁾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함.

□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등 조세특례는 기업 간의 사업재편 시 수반되는 주식등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적 취지가 있고, 오늘날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조세특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¹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10)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아야 하는데, 실제 사업재편의 목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흡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승인할 경우, 정책효과가 제한적이고 불필요한 조세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